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2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5. 23. 안미자 의원 외 7인

나. 회부일자: 2023. 5. 25.

다. 상정일자: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23. 6. 1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권인순 의원

가. 제안이유

-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는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여 마포구 에서 자라나는 여성 청소년들이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생리용품 지원대상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는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검토보고 (장흥용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안미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마포구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 안 제5와 제6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와 환수조치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살펴보면,
2016년 생리용품을 구입할 돈이 없어 '갈창 생리대'를 쓴다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사연(일명 '갈창 생리대'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해오고 있음. 그러나 생리용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서적 불편과 높은 생리용품 가격 때문에 보편적인 지급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음

- 이에 정부는 2021년 3월 24일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선별적 지원방식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모든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 기존 :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임의규정)
 - ▶ 개정 :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강행규정)
다만,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선별 지원을 유지하되 지원대상 연령을 만 9세에서 24세까지로 확대
- 종합적으로 볼 때,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은 필수품이며 건강권 및 학습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저소득 여성 청소년이 자존감과 인권에 상처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부담없이 생리용품을 구비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관계법령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자료

1. 관련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및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제3조의2(보건위생물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보건위생물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을 교부받으려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 마포구 생리용품지원 현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제3항
 -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법정저소득여성청소년 대상 규정
- 지원대상: 만9세 ~ 만24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 연령기준: 1999.1.1.~2014.12.31.사이 출생자(연기준 만 나이 산정)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
- 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 를 통한 전자바우처 지원
 - 연 최대 156,000원 (월13,000원, 신청월 기준 지원)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청소년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신청

□ 지원절차



□ **소요예산:** 총 123,683천원 (국비 37,105천원, 시비 43,289천원, 구비 43,289천원)

○ 산출내역 (2023년)

(단위: 천원)

편성목	금액	산출기초
총 계	123,683	국 30: 시 35: 구35
사회보장적 수혜금	123,683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156,000원×792명≒123,683천원

※ 만9세~24세 마포구 여성청소년 692명 지원 (22.12.31.기준)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